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기부 허용 특례 신설〉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56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연회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1.
3. 회부연월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 사랑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통합으로 새롭게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기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특히 행정통합 직후에는 주민의 생활권,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이 완전히 재편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통합된 지방정부 주민의 기부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주민이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되, 그 기간을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의 한시적 특례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통합으로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이 통합 이전에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함께하던 지역에 대해서도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기부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u> ----- ----- --. 1. <u>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u> 2. <u>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그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 해당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¹⁾에 따라 「지방자치법」²⁾상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³⁾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⁴⁾에 따라 설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이 이에 해당함.

2026년 현재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유일한바, 개정안에 따른 특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은 통합 이전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간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반영한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통합 이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간 고향사랑기부 건수가 2025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3)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를 통합하여 경상남도 창원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의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를 통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년 기준 1082건이고, 금액이 119,166,500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행정통합으로 인한 제도적 제약을 완화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지역적 연고를 반영한 고향사랑기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23~2025년 전라남도·광주광역시 간 고향사랑기부 현황]

(단위: 건, 원)

연도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건수	기부금액	건수	기부금액
2023	584	89,227,400	152	11,298,100
2024	508	51,200,700	508	50,825,200
2025	660	79,025,100	422	40,141,400

※ 자료 : 행정안전부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 형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유지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통합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고향사랑기부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현행법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고향사랑기부를 제한함으로써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주민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5).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구역이 통합된 이후에도 통합 이전과 동일한 기부 방식이 유지되어 동일 행정구역 내 교차적인 기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에 따른 공동체 의식 및 지역 정체성 형성 효과가 다소 제한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설치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구감소지역 및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통합 지방자치단체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과의 형평성 측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현재 개정안의 유일한 적용대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지원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임6).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등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별도의 기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의 검토

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통합특별시 4년 간 20조 원 파격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2026.1.16.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과거 통합되어 이미 설치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통합 지방자치단체⁷⁾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최근 설치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통합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차원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행정통합 직후 지역 통합과 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통합된 광역 지방정부로의 기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고향사랑기부제와 행정통합 간 취지가 상이하고, 특례 신설 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37

7) 현재의 창원시, 청주시 및 여주시 등이 존재함.